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2022. 11. 17.(목) 10:00】

2023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 시 · 교 통 위 원 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교통국)

검 토 보 고

2022년 11월 17일

전문위원 배 금 태

1.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 조성 규모

(기준: 연도말 예치금, 단위: 천원)

| 기 금 명 | 2022년도말 조성액 [㉠]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 | | 2023년도말 조성액 [㉡] = [㉠] + [㉣] | 증감률 |
|----------|-----------------------------|------------------|------------------|---|--|--------|
| | | 수입액 [㉢] | 지출액 [㉣] | 증감액 [㉤] = [㉢] - [㉣] | | |
| 합 계 | 7,067,388 | 3,619,519 | 2,116,400 | 1,503,119 | 8,570,507 | 21.27% |
| 재난관리기금 | 5,083,597 | 1,666,519 | 311,400 | 1,355,119 | 6,438,716 | 26.66% |
| 도로굴착복구기금 | 1,983,791 | 1,953,000 | 1,805,000 | 148,000 | 2,131,791 | 7.46% |

-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 복구기금으로 2023년도 말에 조성할 규모는 총 85억 7,050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311만 9천원(21.27%)이 증가하였음

2. 기금운용(수입·지출)계획

(단위: 천원)

| 기금명 | 수입 | | 지출 | |
|------------------------|---------|------------|-----------|------------|
|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 | 총계 | 10,686,907 | 총계 | 10,686,907 |
| 재난관리기금 (133쪽) | 합계 | 6,750,116 | 총계 | 6,750,116 |
| | · 전입금 | 1,526,519 | · 비융자성사업비 | 261,400 |
| | · 예치금회수 | 5,083,597 | · 융자성사업비 | 50,000 |
| | · 이자수입 | 140,000 | · 예치금 | 6,438,716 |
| 도로굴착 복구기금 (143쪽) | 합계 | 3,936,791 | 합계 | 3,936,791 |
| | · 예치금회수 | 1,983,791 | · 비융자성사업비 | 1,805,000 |
| | · 이자수입 | 28,000 | · 예치금 | 2,131,791 |
| | · 기타수입 | 1,925,000 | | |

가. 재난관리기금

- 재난예방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
- 본 기금의 재원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함
- 수입과 지출은 67억 5,011만 6천원으로
 - 수입은 전입금 15억 2,651만 9천원, 예치금 회수 50억 8,359만 7천원, 이자수입 1억 4,000만원을 계상함

-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 2억 6,140만원, 융자성사업비(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5,000만원, 예치금 64억 3,871만 6천원을 운용할 계획임

나. 도로굴착복구기금

- 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과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효율적 사후 관리 등을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
- 본 기금의 재원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구성함
- 수입과 지출은 39억 3,679만 1천원으로
 - 수입은 예치금회수 19억 8,379만 1천원, 이자수입 2,800만원, 기타수입(원인자부담금)으로 19억 2,500만원을 계상함
 -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도로굴착복구 및 노후 굴착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등) 18억 500만원, 예치금 21억 3,179만 1천원을 운용할 계획임

3. 검토 의견

-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며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음
- 기금별 지출계획은 예산안과 달리 사업설명서가 제출되지 않아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 아울러, 내실 있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및 결과 환류를 통해 기금운용의 적정성 확보와 자산의 안정성·유동성·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 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의 다음 각 목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

· 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우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아.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개량·보수사업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카.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종전 차목에서 이동]

2.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다음 각 목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의 다음 각 목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의 다음 각 목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의 다음 각 목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6. 법 제3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9.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10.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금 전용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금고(이하"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개정 2013.3.13)

② 구청장은 영 제7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21.3.26.)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보수를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시행자가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 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구청장이 정하되 필요시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단가를 준용할 수 있다.
-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